

행 정 자 치 부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관급자재(목재데크)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고성군

관 련 자 고성군 ○○○○○소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1. 7.부터 2014. 10. 12까지 ○○○○○소 기반조성담당으로 근무하면서 “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(○○○○○) 구매” 업무를 추진하였다.

고성군에서는 2014. 7. 4. “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(○○○○○설치) 구매” 계약(계약금액 126백만원)을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○(대표 ○○○)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강원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체결되도록 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한다)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라목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외부의 특혜 시비 등을 야기할 수

있으므로 해당 자재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‘직접생산확인증명서’를 보유한 업체인지 등 수의계약 대상 업체인지 여부를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검토·확인하여야 했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4. 6. 2. 구매 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능인증을 획득하였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인 (주)○○○○○○의 제품을 선정하였으나 위 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.

그러나 계약 당시의 (주)○○○○○○은 위 관서에서 구입하고자 하였던 ‘○○○○’ 대한 직접 생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로서 2016. 4. 11.에서야 중소기업중앙회⁵⁴⁾로부터 직접생산증명이 승인되었다.

그 결과 특정업체가 경쟁입찰 절차 없이 계약을 수주하게 되어 동일(또는 유사)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관계 규정 및 사실 확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54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업무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에 관한 조사·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